

원 저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통의학 DB 구축에 관한 고찰

최환수<sup>1)</sup>, 이재현<sup>2)</sup>, 김용진<sup>3)</sup>

한국한의학연구원<sup>1)</sup>,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sup>2)</sup>,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sup>3)</sup>

### Grope for a Summary Program about a Traditional Medical Database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WIPO

Hwan-Soo Choi<sup>1)</sup>, Je-Hyun Lee<sup>2)</sup>, Yong-Jin Kim<sup>3)</sup>

Department of Oriental Pharmaceutical Science, College of Pharmacy,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sup>1)</sup>

Department of Korean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eajon University, Deajon, Korea<sup>2)</sup>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sup>3)</sup>

**Objectives :** In the WIPO conference about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for traditional knowledge (TK) and genetic resources (GR), there was a demand concerning the necessity of recognizing the invention of TK and GR and the foundation of a related database.

**Methods :** In the standard of the foundation of a database, the content and resource identification standards, the technological standards and the security and transmission standards were discussed. In a deci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it means the protection and recognition as a technology precedent of the materials of the database.

**Results :** Massive material on traditional medical care technology in Korea has existed in many areas. However, it is hard to make a database because it is difficult to organize and find the data. In addition, a database demanded by WIPO is not only the material of images or texts of simple technology information, but also the use of patent decisions about traditional knowledge technology and the public sharing of information in related areas. A traditional medical care database would consist of the core of a subject and the related areas. The core part is the medical herb resource and Oriental clinical technology.

**Conclusions :** These are necessary to detail the kind of medicines and prescriptions, their use, and their processing. In the related areas, it needs to detail PIAS and clinical data in regarding the industrialization. These DB have to protect the TK and the GR of Korea.

**Key Words:** WIPO, traditional knowledge, genetic resources, intellectual property, database

## 서 론

WIPO 정부간위원회에서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로 이하 'TK' (본고에서는 TK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전통의약지식이라는 의미를 포함하여 사용함)라고 약칭함), 유전자원(gene resource)로 이하 'GR' 이라고 약칭함) 등의 지적재산권(이하 '지

· 접수 : 2004년 5월 27일 · 논문심사 : 2004년 7월 14일  
· 채택 : 2004년 7월 23일  
· 교신저자 : 김용진,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Tel. 042-280-2626, E-mail : king@dju.ac.kr)  
\* 연구비지원기관 : 본 연구논문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재권'이라고 간략히 칭함)적 보호에 관한 논의가 6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TK, GR의 목록화 및 DB 구축에 관한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를 보면 문헌화 지원을 위한 Toolkit 개발을 2003년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DB 구축에 대하여 '내용 및 출처확인 표준', '기술적 표준' 및 '보안관련 표준' 등의 기술적인 제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 등의 판단에 있어 DB화된 자료만을 위주로 선행기술로 인정 보호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계적인 논의 동향에 따라 우리의 TK 관련 자료에 관한 DB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국내 전통 임상기술 관련 자료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방대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정리와 발굴이 미흡한 현실이기에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현재 WIPO에서 논의되는 DB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점을 감안한다면 전통 임상기술 관련 자료 정보를 이미지나 텍스트로 가공하여 단순한 기술 정보만을 제공할 것이 아니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기본 사조인 새로운 기술 개발의 사회적 공개로 전통 의학기술의 산업화·상용화를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하며 전통 임상기술의 특허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전통의약 종사자들이 보유한 기술의 공개를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근거로 삼아 WIPO의 논의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리 전통의학 DB 구축에 있어서 핵심 DB와 연관 DB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본 론

### 1) 핵심 DB의 구성요소

WIPO의 TK, GR 및 FL(Folklore로 이하 'FL'로 약칭함)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통의학지식 DB를 구축해야 한다. 이 DB는 우리 전통의학지식의 DB는 WIPO의 논의대상에 따른 전통적 임상기술을 내용으로 하는 핵심 DB와 WIPO 논의주제에 부합되고 DB의 이용율과

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관 DB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핵심 DB는 전통적 임상기술 DB, GR에 속하는 한약재 DB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 (1) 전통 문헌상의 형태에 따른 DB 구성요소

우리 전통의학은 독특한 사유방식과 나름대로 정밀한 이론체계로 인해 현재의 서양의학과는 임상기술이 매우 다르다. 여기서의 임상기술은 바로 의학의 목적인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되는 모든 방법과 기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임상기술은 의학이론을 근거로 해서 실제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통의학의 임상기술은 서양의학의 것과는 다르다. 특히 전통의학의 임상기술의 핵심은 '변증논치(辨證論治, 증후를 변별하여 치료 방법과 기술을 확정함)'에 있다. 이것에는 심증구인(審症求因, 증상을 살펴서 원인을 찾음), 심인구증(審因求證, 원인을 살펴서 증후를 찾음), 의증입법(依證立法, 증후를 근거로 치료방법을 확립함), 의법입방(依法立方, 치료법을 근거로 치료방법과 기술을 확정함)의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임상기술은 환자의 질병 원인과 증후를 탐색하는 진단기술과 질병 퇴치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시술하는 치료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 광의로 보면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모든 기술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임상기술은 전통적 문헌에 전형적인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 이를 고찰한다면 DB 구성요소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기술에 대한 현행 지적재산권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고-현행 지적재산법 테두리에서 진단과 치료기술이 전문가의 행위를 위주로 하는 경우에는 거의 보호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독특한 침법인 사암침법과 같은 치료기술은 그 자체로는 현행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보조도구를 사용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진단과 치료기술 즉 새로운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임상기술을 우선적으로 DB화 해야 할 것이다.

Table 1에는 약물과 임상기술에 대해 전통적 문헌(동의보감) 및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Table 1. A Comparison of Traditional Literature with Modern Literature on Herb and Clinical Technique**

구분	전통 문헌(예: 동의보감)	현대적 문헌
한약재(약물)	赤小豆① : 불근 罇④ 性平(一云微寒一云溫)味甘酸無毒⑨主下水排癰腫膿血治消渴止泄利小便下水腫脹滿⑩<本草②> ○ 消熱癰腫散惡血⑪<本草②> ○ 小豆性逐津液主水氣脚氣方最要行水通氣 溢脾之劑⑪久服令人黑瘦枯燥⑭<入門②> ○ 入藥宜用早種色赤者晚種者力弱⑮<本草②> ○ 赤小豆陰中之陽解小麥毒①<湯液②> 藥물명①(첫번째) 기록 문헌②, 라틴명(생약명)③, 이명④, 기원⑤, 성상⑥, 산지⑦, 성분⑧, 성미⑨, 귀경⑩, 효능 주치⑪, 해설⑫, 수치⑬, 용량⑭, 금기증⑮, 배합례 등	약물명①(첫번째) 기록 문헌②, 라틴명(생약명)③, 이명④, 기원⑤, 성상⑥, 산지⑦, 성분⑧, 성미⑨, 귀경⑩, 효능 주치⑪, 해설⑫, 수치⑬, 용량⑭, 금기증⑮, 배합례 등
약물 이용 임상기술(방제)	三精丸① : 久服 輕身 延年 益壽 面如童子⑤ 蒼出 <天之精> 地骨皮 <地之精> 各淨末一斤 黑桑椹 <人之精> ③ 取二十斤 揉爛 入絹袋內 絞取汁 去滓 將兩藥末 投計內 調勻 入罐內 密封口 關於棚上 晝採日精 夜採月華 直待自然煎乾 方取爲末 蜜丸小豆大⑩ 每十九 酒湯 任下④<入門>②	처방명①, 출전②, 구성③, 용법④, 공효⑤, 주치⑥, 처방 해설⑦, 운용⑧(운용의 요점, 가감응용, 사용상 주의점), 부방⑨ * ⑩ 제조법
도구 이용 임상기술	點眼藥① : 凡點洗之法② 若暴赤腫血壅氣滯者 一時連點三五次 如氣血稍虛者 宜服藥以塞 其源藥水洗之 生有雲膜 方可用點 若無翳膜 但可洗之 却忌過用涼藥 及冷水洗滌 至如鍼刀火烙③④⑤ 古人忌用如金篦 刮撥另是一家傳授不可妄施⑥<入門>⑧	요법명칭①, 개요②, 기본내용(조작방법③, 치료기전④), 임상응용⑤, 주의사항⑥, 고찰⑦ * ⑧ 출처

본초학"과 방제학 교재" 및 전통적 임상 치료기술 문헌서적"을 중심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보면 현대 전통적 임상 기술의 설명 항목들도 전통적 문헌의 기록형태를 근간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적 문헌에 나타난 설명 항목들을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WIPO의 논의에 따른 DB 구성 요소

WIPO에서는 보호하려는 TK의 범주를 앞으로 구축된 DB로 한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TK 등에 대한 자료 혹은 묘사 형태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DB 구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표준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즉 (1) 어떻게 TK와 관련된 생물/유전 자원이 DB와 등록에서 가장 잘 묘사될 수 있을지를 구분하는 내용과 자원 확인 표준 (content and resource identification standards,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를

포함하여); (2) TK와 관련된 생물/유전 자원에 대한 데이터가 DB와 등록에 저장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술적 표준(technological standards); (3) 어떻게 DB에 대한 접근이 통제되며, TK와 관련된 생물/유전 자원에 대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DB와 등록 사이에 교환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보안 전송 표준(Security and transmission standards) 등이다. 이 중 (1)의 경우가 본고에서 분석할 DB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1)에는 DB나 등록에서 나타나야 할 최소한의 데이터 영역 및 메타데이터(Metadata) 표준, 그리고 용어와 단어 표준을 포함하고 있다<sup>6)</sup>. 이는 앞으로 구축하게 될 DB는 세계적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공하는 언어상의 문제, 그리고 TK에 대한 나라마다의 묘사 형태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이러한 표준화를 해야만이 세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WIPO에서 제안된 DB나 등

**Table 2. The Requested Title of Database to WIPO's Proposal**

영역 명칭(INID 코드)	영역 내용 정의
(10) 기록의 확인	
기록 번호	TK 혹은 관련 생물/유전 자원 요소에 관한 DB 기록의 번호
* 문서 번호(11)	TK 요소 혹은 관련 생물/유전적 자원의 IP 보호를 제공한 문건의 번호
기록 형식(12)	문건의 종류에 대한 일반 언어 식별
(20) 타이틀 신청 관련 데이터	
신청 번호(21)	TK 요소 혹은 관련 생물/유전적 자원을 보호하는 IP 명칭 적용에 제시된 번호(들)
*접수 일자(들)(22)	TK 요소 혹은 관련 생물/유전 자원을 보호하는 IP 명칭에 대한 신청 일자(들)
신청에 관련된 다른 일자(들)(23)	TK 요소 혹은 관련 생물/유전적 자원의 완전한 묘사를 접수한 일자(들)를 포함하여, 조항 묘사와 제시 일자(들)를 포함에 따른 다른 일자(들)
(40) 대중에 공개된 일자	
공개 일자(09)	알려진 경우, TK 요소가 공개되어 대중에 제공된 일자
출판 일자(40)	허가가 언급된 일자(들), 혹은 그 이전에 수행된 TK 요소 혹은 관련 생물/유전 자원을 묘사한 IP 문건을 대중에 공개한 일자
(50) 기술적 정보	
국제 특허 분류(51)	TK 요소 혹은 관련 생물/유전적 자원이 분류된 국제 특허 분류의 등급, 하위 등급, 집단 혹은 부 집단
다른 분류(52)	TK 요소 혹은 관련 생물/유전적 자원이 분류된 지역, 혹은 국가 분류의 등급 혹은 하부 등급
타이틀(54)	TK 요소 혹은 관련 생물/유전적 자원의 타이틀
선취 특허권 문건(56)	만일 묘사적 문건에서 분리되었을 경우, 선취 특허권 문건의 목록
요약 혹은 청원(57)	TK 요소 혹은 관련 생물/유전적 자원의 요약 혹은 청원
검색 분야(58)	
검색 분야	
(70) 기록과 관련된 단체들의 확인	
정보 제공자의 이름(들)	기록에 기재된 정보 제공자의 이름과 주소
* (개인/공동체) 타이틀 신청자의 이름(들)	기록에 묘사된 TK 요소 혹은 관련 생물/유전적 자원에 관련된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지식 혹은 관련 자원의 보유자(72)	TK 요소 혹은 관련 생물/유전적 자원의 구속자들의 성명과 주소
있다면, 타이틀 피 허가자,	TK 요소 혹은 관련 생물/유전적 자원에 대한
보유자, 이전자 혹은 보유자(들)(73)	타이틀의 타이틀 피 허가자, 보유자, 이전자 혹은 보유자(들)의 이름과 주소
(00) TK 혹은 관련된 자원의 특수 데이터	
접근 조건(01)	사회/문화적 금기와 제한을 포함하여, TK 요소 혹은 관련 생물/유전적 자원의 기록에 대한 다른 이용자들, 분류와 목적에 대한 접근 조건 요구될 경우, TK 혹은 관련된 자원의 보유자들에게서 받은 그 편집, 해체와 적용에 관한 승인과 협약.
보유자(들)의 승인과 이들과의 계약(02)	유전 생물적 자원의 과학적 명칭
과학적 명칭(들) (03)	지역 언어로 된 유전 생물 자원의 자국 명칭
자국 명칭(들) (04)	TK 요소, 민족 의학적 분류와, 유전 생물 관련 자원에 대한 자세한 묘사
묘사 (05)	TK 요소와 관련 생물/유전 자원이 분류된 인덱스 용어와 키워드
키워드(06)	TK 요소와 관련 유전 생물적 자원을 대중에 공개한 출판물에 대한 서지학적 데이터
서지학적 예시(07)	TK 요소와 관련 자원이 원래 묘사되었던 언어
언어 (코드)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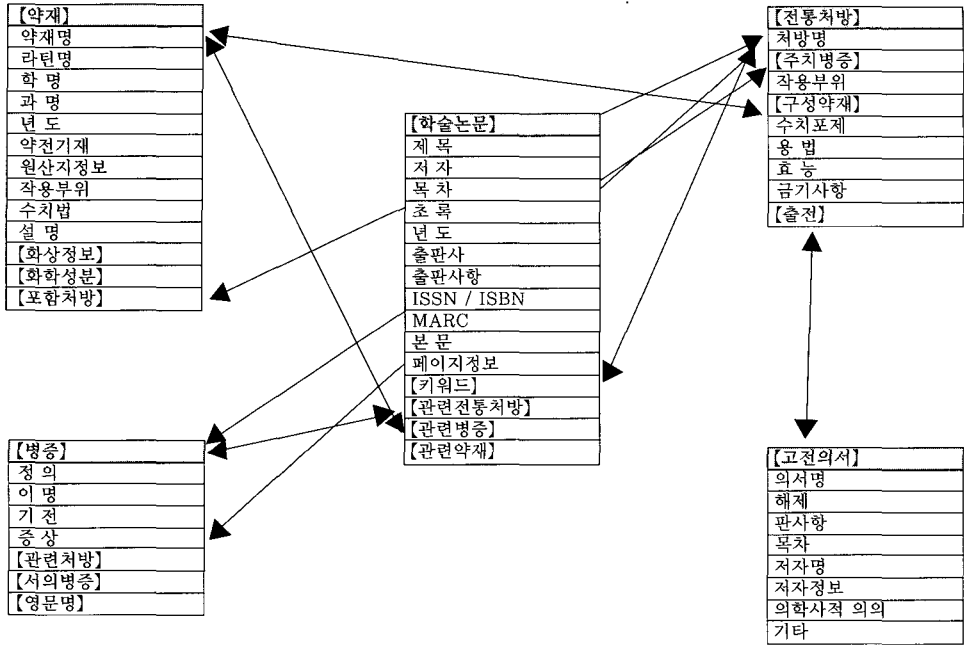


Fig. 1. The factor and correlation of each database

록에서 나타나야 할 최소한의 데이터 영역 내용에 관한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우리의 TK 관련 전통문헌이나 현대 문헌의 형식에만 근거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외에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공개된 TK와 관련된 문헌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검색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허받지 않은 문헌들을 비특허문헌으로서 PCT(특허협약규정, Patent Cooperation Treaty) 목록에 통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전통적인 문헌에 산재한 TK만을 DB화 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지나 어떤 형식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TK도 DB화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WIPO 논의를 보면 세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DB의 검색 언어를 다양화하고, 이미 공개된 학술지와 지재권법 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DB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전통적 임상기술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밀접하게 관련된 요소들은 대한약전, 화학성분, 용어사전(병증명 포함)과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대한 약전은 한약재에 대한 국가의 표준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 DB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WIPO의 GR에 대한 활용과 이익분배의 논의를 보면 더욱더 이러한 대한 약전 항목은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화학성분 항목이 필요하다. WIPO에서 TK DB의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 신약 개발 등을 위해 GR을 검색하려고 한다면 GR의 학명뿐만 아니라 화학성분 또한 중요한 검색어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용어 사전은 한방 관련 용어가 세계 의료계에서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방 용어에 대한 개념과 영어명 등에 대해서도 제공해서 세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able 4.** The List of PIAS' s Analyzing Technique

기본분석	특허년도, 국가코드, 발명자, 출원인, 중요도, 특허종류, IPC(5단계), 기술분류(4단계)
연도별 동향분석	발명자별, 기술별, 출원인별, 국가별, 중요도별
출원인별 동향분석	연도별 출원, 점유율 분석, 국가별, 기술별, 출원기간 분석, 신규출원인수, 발명자수
기술별 동향분석	점유율 분석, 국가별 동향, 출원비율, 연도별 특성별 특허번호 리스트, 연도별 출원인 리스트, 기술분류별 비율
발명자별 동향분석	연도별 신규발명자수와 발명자 누계, 연도별 기술별 공동발명자군, 발명자 이동현황 리스트
특허정보 요소의 상관관계 분석	특허분류-특허분류, 출원인-출원인, 기술협력회사 리스트, 출원인별 기술협력회사별 기술분야 맵
기술발전도 분석	기술 MTX 맵, 기술성숙도 맵, 기술 로드맵
특허 인용관계 분석	특허 인용관계, 핵심특허 분석
권리분석	Family 맵, Claim point 맵
기타출력물	특허요지 리스트, 요지 맵, 특허지정 리스트

2) 연관 DB

(1) TK 관련 지적권 효율성 제고

TK 분야의 지적권 보호 건수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정보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서비스에는 PIAS(Patent Information Analysis System)가 있다. TK 등에 관한 DB 구축에 있어서도 이러한 정보분석 시스템을 응용해 서비스 한다면 TK 관련 신기술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는 특허청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PIAS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PIAS는 특허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을 수작업으로 행하던 기존의 제작방법을 대신하여, '주제선정부터 분석까지 특허지도 작성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이는 특허정보의 서지적 사항(발명의 명칭, 출원인, 발명자, 출원번호, 출원일, 공개번호, 공개일, 등록번호, 등록일, 기술분류(IPC분류), 인용특허 등)를 통계적으로 해석하여 도표, 차트의 형태로 표현하는 정량적 분석과, 초록 및 청구범위를 이용한 기술내용의 분석·정리를 하는 정성적 분석 등의 결과를 차트나 도표의 시각적 형태로 제공한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분석기법 리스트는 총 45개이다.

이 PIAS는 그 분야의 기술개발의 과제나 방향 설정 그리고 특허의 출원방안과 활용에 충분히 응용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TK 관련 산업화 촉진

TK, GR의 권리보호에 대한 WIPO 논의에 대처 방

안으로 산업화 시스템 개발 연구까지 언급하는 것은 논리가 비약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지적권 본래 의미에는 단순한 권리 보호가 아니라 산업화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권적 권리 보호는 산업화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한방 산업 현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영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TK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고, 또한 시장 자체도 적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TK가 근거하는 의료시장은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DB를 통해 TK 관련된 산업화의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할 것이라고 본다.

1) 기술거래소

일반적으로 기술보유자(기업, 연구원, 발명가 등)로부터 판매희망기술을 위임받아 기술분석과 기술마케팅을 실시하여 수요자(기업 및 사업가)를 발굴하고 이전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현재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보유한 기술의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강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이다. 즉 어떤 기술 보유자의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권리보호와 산업화 컨설팅을 하면서 투자자와 연결시켜 산업화가 성공하도록 가이드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사업 아이템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이들에게 맞는 사업 아이템을 제공하며, 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

도록 개발할 수 있는 연구에게까지 연결시키는 서비스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통해 기술 보유자, 연구기관, 투자자, 기업체 등을 연결시켜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의약 분야의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형적인 전자 차트형식 및 이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가치 임상자료 DB도 필요하다.

또한 전통의약 분야의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 가치평가란 무형의 기술에 양적인 공정 시장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과학기술과 기업금융사이의 보편적인 의사소통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TK, GR의 가치평가 시스템 개발은 이의 권리 보호 뿐만 아니라 실용화, 상품화하기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로서 연구개발할 가치가 있는 TK, GR의 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전문가 그룹에 의한 Delpei 방법<sup>7)</sup>을 활용하여 기초작업을 하면서 TK, GR 특성에 맞는 객관적인 평가방법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개발된 평가시스템으로 평가된 TK, GR의 가치 분석 정보에 대해 실시간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 2) 특허 풀(Pool)제

본래 특허 풀은 다수의 특허권자들이 특허업무대행기관에 자신들의 특허를 공동으로 위탁관리토록 하는 형태의 특허권의 집합체(Pool)로서, 특허업무대행기관이 특허권자들을 대신하여 특허권자간의 상호교차 사용계약(cross-licensing), 제3자에 대한 특허사용계약, 로열티 징수 및 배분 등의 포괄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데 드는 막대한 제반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의 표준화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고, 기술정보의 체계적 교류의 효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본고에서 말하는 한방 특허 풀 제도는 연구와 산업화 역량이 부족한 한방 기업체에 정부, 각종 연구소, 대학 등으로 분산된 한방 산업 관련 특허 기술을 집중시켜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시스템이 본래 특허 풀 제도와 다르다.

즉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한방 산업화에 관련 기관을 모두 이곳으로 집중시켜 지금보다 나은 한방 산업 환경을 조성해서 한방 산업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 고찰 및 결론

WIPO의 TK 등의 지적권적 보호 논의에서 DB화된 TK 등만을 보호하자는데 의견의 일치가 있었으며, 더 나아가 아시아그룹에서 DB 구축 관련해서 기술적 사항중에 DB 내의 필드 정의 및 구분 기호 표준, 메타데이터 표준 및 사용 용어 표준 등 TK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내용 및 출처 확인을 표준화하자고 제안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재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선진국도 아니고 풍부한 GR의 보유국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고 단순하게 판단해 우리의 TK, GR에 대한 어떤 보호장치나 DB 혹은 전자도서관과 같은 노력을 국가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좀더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도 TMK를 포함하는 TK, GR이 현재까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생명공학 발전의 잠재성까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 논의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신속하게 대처해야한다. 특히 WIPO 논의의 진행상황은 전통적 임상기술을 포함하는 우리의 TK에 관한 DB를 빠르게 구축하라고 재촉하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 앞으로 구축해야만하는 전통적 임상기술 DB의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통적 임상기술 DB를 크게 핵심DB와 연관DB로 구분하고 전자에는 전통적 임상기술이 기록된 문헌과 WIPO 논의를 근거로 그 구성요소를 살펴보았고, 후자의 경우는 한방 산업의 촉진을 목적으로 그 구성요소를 살펴보았다.

핵심DB에는 크게 한약자원과 임상기술 DB로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구성요소로는 전자에는 약물명, 라틴명, 학명, 속명, 이명, 기원, 산지, 성분, 약물특성(성미, 귀경), 효능, 주치, 수처, 금기, 배합

레 등을 포함하고, 후자는 처방명, 효능, 주치증 분류, 주치증, 구성약물, 복용법, 제조법, 조작기법, 출전1, 출전2, 저자(소유자), 출판년도, 요법분류, 변방(처방명, 증상, 구성약물), 가미방(증상, 구성약물) 등의 구성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이외에 전통적 임상기술 정보와 관련된 정보DB로는 대한약전, 화학성분, 용어사전, 논문리스트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방의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관DB에는 특허정보분석시스템(PIAS), 기술거래소, 특허 풀(pool)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거래소의 경우는 가치평가시스템과 전문임상가들이 소유한 기술을 공개하도록 하는 임상자료 DB 등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형식이던지 TK, GR 등에 대한 지재권적 보호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에 근대 보건의료체계 내에 전통의학을 인정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TK 특히 전통의학에 대한 지재권을 인정할 경우 높은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통의학 가운데 전통적 임상기술은 지재권 보호에 있어서 핵심이다. 또한 지재권의 근본 목적인 한방에 대한 산업화를 촉진시켜 소극적인 보호가 아닌 적극적인 보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전통적 임상기술 DB 구축일 것이다. 앞으로 전통적 임상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통해 한방 산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또한 우리의 TK, GR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 참고문헌

- 1) WIPO/GRTKF/IC/4/4
- 2) 楊思澍, 張樹生, 傅景華 主編. 中醫臨床大全. 2차인쇄.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3: 1.
- 3) 康秉秀 외 編著. 本草學. 초판. 서울: 永林社. 1991.
- 4) 方劑學教授 編著. 方劑學. 개정증보판. 서울: 永林社. 1999.
- 5) 裘沛然 主編. 中國中醫獨特療法大全. 3차인쇄. 上海: 文匯出版社. 1993.
- 6) WIPO/GRTKF/IC/4/14/ANNEX. TECHNICAL PROPOSALS TO THE WIPO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P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 7) 이한기. 전통지식의 개발가치 평가 연구. 농촌생활과학. 2000;21(2)